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. 8. 28 선고 2014가합3995 판결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문중

피 고 A종중

변론 종결 2015. 7. 2.

판결 선고 2015. 8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5. 11. 명칭변경을 원인으로
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로 2014. 7. 4. 접수 제26727호로 경료한 각 4번, 5번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분할 전 경기 안성군 B 임야 13정 9단 3무보(이하 '분할 전 이 사건 임야'라 한다)는 C, D, E, F, G, H 명의로 사정되어 1932. 4. 11. 위 6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.

나.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순번대로 '제1 내지 5부동산'이라 하고, 모두를 일컬을 때에는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.

다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, D, E, G, H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35. 10. 31.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,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71. 7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,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'A문중'(원고) 명의의,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하여는 'A종중'(피고)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이후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98. 3. 14., 이 사건 2, 4 부동산에 관하여 1998. 1. 14.

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. 2. 23. 위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하여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,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. 7. 4. 접수 제26727호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(이하 '이 사건 변경등기'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(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J씨 25세손 C의 후손으로서 안성시 K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소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인 원고와 J씨 18세손인 I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인 피고는 서로 다른 단체인바, 이 사건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와 피고는 모두 J씨 18세손인 I의 납계후예로 구성된 동일한 종중으로서 이

사건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, 원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,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3, 5, 6,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1 원고와 피고의 명칭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'L'이 J씨 18세손 I를 지칭하고, 이 사건 1부동산에 위 I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, 2 1994. 8. 20.부터 시행된 'A종중'의 규약에는 "본 종중의 명칭은 A종중이라 칭한다(제1조). 본 종중은 L파 묘소의 수호보전 및 재산의 관리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(제3조). 본 종중은 I의 납계후에는 행렬의 고저에 불구하고 회원이 된다(제4조)."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, 3 한편, 원고의 종원인 M은 2012년 1월경 " 2012. 1. 2. 전 회장 N의 자택에서 종중원 7명 중 7명 전원(M, O, P, Q, N, R, S)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 총회(이하 '이 사건 총회'라 한다)를 개최하였고, 위 총회 참석자들이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M을 선임하였으며, A종중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명칭을 'A문중'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(이하 '이 사건 결의'라 한다)하였다"는 내용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, 위 의사록에 나타난 전 회장 N은 J씨 18세손 I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25세손 C의 후손은 아닌 사실, 4 I의 후손인 T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소송(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호)에서,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주장과 같이 '원고와 피고는 별개의 단체이고 T은 원고의 종원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'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I의 후손들로 구성된 동일한 종중임을 이유로

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, 이 사건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(서울고등법원 2013나23305) 및 상고(2013다81002)이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. 2. 6.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, 여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결의는 C의 후손이 아닌 N이 소집하여 개최되었고 원고가 피고와 동일한 단체임을 전제로 그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는 별개로 I의 후손들 중 다른 종원들을 배제한 채 C의 후손만을 종원으로 하는 소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원고가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는 명칭만 다를 뿐 J씨 18세손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동일한 단체라고 할 것이고, 달리 원고가 J씨 25세손 C의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이 사건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재호, 판사 김애정, 판사 이경린

[별지]

목 록

1. 안성시 U 임야 114,117㎡
2. 안성시 V 전 6,645㎡
3. 안성시 W 대 1,755㎡
4. 안성시 X 전 3,669㎡
5. 안성시 Y 전 5,640㎡ 끝.

